

구미시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  
공공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# 구미시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6. 1. .  
제출자 : 구미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주도형 중소기업 발굴·육성을 위해 맞춤형 지원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.
- 나. 전문성과 산업 네트워크를 갖춘 공공기관 역량을 활용하여 국제 주요 전시회 참가(참관), 무역사절단 파견 등을 수행함으로써,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- 다. 구미시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사무명 : 구미시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
- 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 : 국제 주요전시회 참가(참관) 및 무역사절단 파견을 위한 전문성과 산업 네트워크 보유 공공기관 역량 활용

다. 위탁 사무 내용 : 국제전시회 공동참가(참관), 무역사절단 파견 등  
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관련 제반 업무

라. 위탁시설 : 해당없음.

마. 위탁기간 : 2026. 2. 1. ~ 2026. 12. 31.

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총 300백만원

(단위 : 백만원)

계	인건비	간접비	사업비	비고
300	60	30	210	

사. 적정성 검토결과 : 적정 ※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(251231)

아. 위탁구분 : 재계약 (수탁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)

### 3. 부서의견

가. 제조업 중심 지역산업 및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맞춰 지역  
내 기반산업 전환 대응을 위해 전략적 판로개척 활동이 중요하며  
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춘  
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함

나. 2025년도 사업추진 결과

사업내용	일 정	지 역
태국 제조생산전시회(ME) 공동 참가	2025. 6. 16. ~ 6. 22.	태국 방콕
베트남 무역사절단 파견	2025. 10 .27. ~ 11 .1.	베트남 (하노이, 호치민)

다. 2026년도 사업추진 계획

사업내용	일 정	지 역
태국 제조생산전시회(ME) 공동 참가	2026. 6. 15. ~ 6. 21.	태국 방콕
대만 무역사절단 파견	2026. 9 .1. ~ 9. 5.	대만
세미콘 타이완(Semicon Taiwan 2026) 공동 참관	2026. 9. 2. ~ 9. 4.	대만 (타이페이)

라. 세부 추진 계획

- 기 간 : 연중
- 지 역 : 태국 및 대만
- 대 상 : 관내 중소기업
- 주요내용
  - 태국 방콕 제조생산전시회(ME) 구미 관내 기업 공동 참가를 통한 기업 제품 전시 및 수출상담 개최
  - 대만 무역사절단 파견 및 수출상담 개최
  - 아시아 유명 반도체 전시회 '세미콘 타이완(Semicon Taiwan 2026)' 공동 참관을 통한 해외 세일즈 활동 및 첨단 기술 트렌드 파악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(2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- (3) 「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 제24조
- (4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- (5) 「구미시 기업지원사업 운영 요령」 제3조, 제8조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편성

다.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라.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, 감사결과

: 2025년도 성과평가 및 감사 미시행(관련 조례 2026.1.1.일 시행)

# 관계법령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□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

제4조(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)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
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·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책임행정의 보장성

제6조(의회 동의)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~6. 생략

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기존의 위탁사무를 재위탁 및 재계약하는 경우
2. 기존의 위탁사무의 예산이 작년 대비 혹은 동의안 대비 30% 이상 증감하는 경우

## □ 「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

제24조(우선구매·판로 지원) ① 시장은 시 또는 시의 관할 직속기관·출장소·사업소·읍면동에서 물품·용역(이하 “제품”이라 한다)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우수제품을 발굴·홍보하고 국내외 시장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
## □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6조 (업무의 위탁) ①시장은 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## □ 「구미시 기업지원사업 운영 요령」

제3조(용어의 정의)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주관기관”이란 지원사업의 효율적 계획·운영·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로부터 사업 수행을 위탁받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.

제8조(주관기관) 주관기관은 시 지원사업의 진행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며,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
1. 사업 세부 계획의 수립 및 시행
2.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의 운영
3.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
4. 사업자와의 협약 체결·변경·해약
5. 수혜기업의 DB 구축·관리·활용 및 플랫폼 구축 및 운영
6. 사업성과의 관리·활용
7. 기업지원 사업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
8. 신청기업에 진행 정보 제공 등 사업 관련 업무
9.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

# 구미시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 1. 재정수반요인

- 국제 전시회 참가(참관) 및 무역사절단 파견 추진 위한 사업비용

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국제 전시회 참가 및 부스 운영비, 통역비 등 제반비용
- 무역사절단 파견 및 관련 임차료, 통역비 등 제반비용
- 국제 전시회 참관 관련 비용

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천원)

구분 \ 연도	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	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세출	위탁사업비	300,000	-	-	-	-	300,000

### 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천원)

구분 \ 연도	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	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	국비	-	-	-	-	-	-
	도비	-	-	-	-	-	-
	시비	300,000	-	-	-	-	300,000
	민간	-	-	-	-	-	-
	기타	-	-	-	-	-	-
	합계	300,000	-	-	-	-	300,000

### 5. 부대의견

- 없음

### 6. 작성자

- 투자유치과 국제통상팀 변정훈(☎ 480-6144)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구분		수량 (건/개사)	단가 (천원)	금액 (천원)
합계				300,000
인건비		1	60,000	60,000
직접비	해외전시회 공동참가 - 기업 편도항공료 - 참가운영비, 입장료, 통역비 등	5	25,000	125,000
	무역사절단 파견 - 기업 편도항공료 - 수출상담회 개최비, 바이어발굴, 임차비, 통역비 등	8	7,380	59,040
	해외전시회 공동참관 - 기업 편도항공료, 입장료, 통역비 등	8	2,000	16,000
	전문가활용비 - 참가기업 및 수행사 선정 등 평가위원회 위원수당	2	1,500	3,000
	국내여비	4	40	160
	회의비	2	350	700
	기타 수수료	2	50	100
	연구수당	1	6,000	6,000
	간접비	1	30,000	30,000

소 관 부 서		투자유치과
입 안 자	과 장	유 태 란
	팀 장	오 미 영
	담 당 자	변 정 훈 (480-6144)